2023년 상반기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사업 계획

○ 외로움 등의 이유로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사회경제적 취약가구에 동물 의료비 지원을 통하여 동물복지 향상 기여

○ 돌봄 취약가구의 장기간 부재시 반려동물에 대한 돌봄 위탁관리서비스를 지원하여 반려동물 양육부담 완화

1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3월 ~ 6월 (상반기)

○ 사 업 비 : 3,000천원(도비 900, 시비 1,500, 자부담 600)

○ 지원비율 : 도비 30%, 시비 50%, 자부담 20%

○ 사 업 량 : 15두

○ 사업내용

구 분	지원항목	지원단가	비고
의료지원	백신접종비, 중성화수술비, 기본검진·치료비(수술 포함) 등	200,000원	
돌봄지원	반려동물 돌봄 위탁비	200,000원 (최대 10일 기준)	

* **반려동물** : 동물보호법 제2조에 의거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 초과비용은 자부담
  - 비용이 200,000원 이상일 경우 160,000원 지원
  - 비용이 200,000원 미만일 경우 총 금액의 80%까지 지원

2 지 원 대 상

○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 돌봄** 취약가구(중증장애인, 저소득주민,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의 반려동물 (※ 1인 가구는 소득관계 없이 지원 가능, 하지만 우선순위 제외)

*** 기준 중위소득 기준 붙임 8p 참고**

*** 내장형 마이크로칩으로 등록이 된 반려동물에 한함.**

(반려묘는 동물등록여부 관계 없으나 등록 시 우선 선정)

* 동물등록 여부 확인(법적 소유권자 확인), 미등록 동물은 先동물등록 후 신청(내장형)

파주시 / 동물관리과 / 박상수 / 2023-03-02 10:07 / 개인정보 보호, 당신의 손끝에서 실천됩니다.

○ 대상기준

구 분	기준(근거법령 등)	비고
중증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저소득주민	「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한부모가족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다문화가족	「파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1인가구	「경기도 1인가구의 사회친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1인가구	

* 사업대상자로 선정 전 돌봄가구가 시행한 반려동물 의료서비스는 지원대상 아님 (소급적용 불가)

3 사 업 절 차

신청 접수 (신청자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신청서 검토 및 대상자 선정 (동물관리과)	사업시행 (소유자)	돌봄·진료 등 제공 (동물병원 등)	비용 청구 (소유자 ⇒ 동물관리과)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 주소지 및 취약계층 여부 확인(1차)	• 주소지 및 취약계층 여부 확인 (2차) 및 대상자 선정 • 선정결과 통보	• 동물병원 또는 돌봄 위탁관리업체 방문 및 서비스 지원	• 돌봄(최대10일) • 의료서비스(백신 접종·중성화수술·검진·치료·수술 등)	• 비용 청구

○ **(소유자)** 해당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접수**

- 신청서**[서식 1]** 작성 제출
-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서식2]** 1부.
- 주민등록 등본(세대주와 세대원 포함)
- 지원 대상기준(취약계층) 입증 증빙서(붙임 7p 증빙서류 참고)
- 동물등록증 사본(**반려견에 한함**_동물등록여부, 등록번호, 법적 소유자 확인 등)
- 중증장애인 등 보호자(대리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

파주시 / 동물관리과 / 박상수 / 2023-03-02 10:07 / 개인정보 보호, 당신의 손끝에서 실천됩니다.

○ **(행정복지센터)** 신청자의 “관할 지역 내 실제 거주 여부” 및 “지원대상 여부” 확인 조회 후 시 담당부서(동물관리과)로 제출

○ **(동물관리과)** 대상자 선정(선정결과 개별 통보)

○ **(소유자)** 관내 동물병원 및 동물위탁관리업체 등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받고 선결재 한 후 영수증 등 증빙서류 첨부하여 파주시 동물관리과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보조금 청구(행정복지센터로 접수한 경우 행정복지센터는 청구서를 파주시 동물관리과로 제출)

※ 소유자는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라 동물병원으로 개설되었거나, ‘동물보호법’ 제33조에 따라 동물위탁관리업으로 등록된 업체 등을 확인 후 이용.
(동물병원, 동물위탁관리업 영업장 내 인허가 신고필증 게시 확인 등)

- **청구서[서식 3], [서식 4]** 작성 제출
-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 병원진료비, 수술비, 예방접종비 등 세부내역 영수증 첨부
- 진료기록 또는 돌봄(위탁) 서비스 이용 사실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
  * 예시) 의료지원: 동물병원 진료기록부 등, 돌봄지원: 위탁계약서 등
- 청구인 통장사본
- 청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동물관리과)** 사업대상자의 보조금 청구서 및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보조금 지급

붙임 사업신청서 및 제출서류 1부. 끝.

파주시 / 동물관리과 / 박상수 / 2023-03-02 10:07 / 개인정보 보호, 당신의 손끝에서 실천됩니다.